

“데이터베이스 육성 진흥법 제정 시급하다”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Shin, kak-chual.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 개발자금지원제도의 형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시책을 전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최근에 한국통신에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이다. 한국통신에서는 개발 설계서와 함께 개발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능력있는 업체에 한하여 개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개발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형

태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한국통신에서 여러업체를 상대로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에 관한 제안서를 받는다. 즉 개발설계·운영설계등 사업계획서를 받아 상세히 검토한 다음, 개발의 필요성과 사업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한국통신이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한국통신은 ‘도급인’이 되고 선정된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는 ‘수급인’이 된다. 보통 민법 제

664조~674조에 의한 도급계약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크게 2가지 형태가 있다.

① 도급인이 2억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된 기간내에 지정된 조건에 맞게 개발·완료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권리(저작권)를 도급인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는 보수만을 받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

② 도급인을 수급인에게 개발·보수 2억원을 지급하고 개발·

완료후에도 그 권리(저작권)는 계속 개발자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수급인)에게 있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2억원을 갚아 나간다.

서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개발 완료되면 보통 질권을 설정한다. 즉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질권 설정등록을 하였지만 개발자는 그 저작권을 계속 행사하여 개발지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도급인에게서는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수급인에게서는 매우 유리한 계약이다. 이러한 형태의 개발지원금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건실한 데이터베이스사업자가 늘어나고 노하우를 축적시켜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의 방법은 「위임계약」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앞의 도급계약 형태의 개발지원금제도는 도급인이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철저하게 간섭하고 요구한 조건에 합당할 때에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나 위임계약 형태의 경우는 도급인은 거의 간섭을 하지 않고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도록 협조한다.

즉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인에게 대폭적으로 권리를 위임하기



도급계약 형태의 개발지원금제도는 도급인이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철저하게 간섭하고, 요구한 조건에 합당할 때에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나 위임계약 형태의 경우는 도급인은 거의 간섭을 하지 않고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도록 협조한다.



때문에 위임계약이라 한다. 예컨대, 한국통신에서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상당한 실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적인 설계서(제안서)를 검토한 다음 세부조건이 아닌 포괄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개발지원금을 지급한다. 미리 개발지원금 전액인 2억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개발의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민법)에서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680조~692조).

위임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

이 좋으나 아니면 도급계약의 형태가 좋으나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전문분야의 학술용역은 대부분 위임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상당한 기술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학술용역의 성격도 있지만, 정보처리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성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는 것도 무방하다.

여하튼 개발지원제도는 당사자간에 사안에 따라(case by case) 결정할 것이지 확일적일 수가 없다. 예컨대, 수급인이 법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거나 공신력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일 경우는 도급인의 판단에 따라 위임계약 형태도 바람직하다.

◆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인정문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저작권) 인정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저작물」의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순수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즉 「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

로서 볼 경우는 편집저작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첨가되어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성격도 지닌다.

더욱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오늘날 멀티미디어,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대의 데이터베이스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시스템으로서의 복합적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데이터집합물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전송·변환·검색 등 일련의 모든 활동 즉 '시스템데이터베이스'로서 통합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 개념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규정'에 있는 저작물이 거의 포함되는 집합체일 수도 있다. 예컨대, ①어문저작물로서는 데이터의 집합물(편집저작물)이며, ②멀티미디어등 영상과 음악이 포함된 경우는 영상저작물 및 음악저작물이 되며, ③도표·모형등이 포함되어 도형저작물일 수도 있고 ④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성격도 상당부분 포함된다.

이와 같이 넓은 개념으로 확대해석할 경우 저작권재산권 인정과 행사에 있어서 혼란이 온다.

특히 저작권재산권의 행사는 일반 저작물인 어문저작물(편집저작물)의 경우와 영상저작물·음악저작물 등을 근거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행사가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이 통상 50년인데 비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또한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도 있다(저작권법 제5장).

이와 같이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최근에 제정된 「영상진흥기본법」(1995. 1. 5 제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영상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전자장치(電子裝置)에 의하여 보고, 듣고, 전송, 수신등을 할 수 있는 물체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한정시켰다. 한마디로 멀티미디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사 영상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하여도 이와 같은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 '멀티미디어'에 대한 법적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

야 한다는 주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 자금지원제도도 달라질 수 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자금지원의 문제점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재산권 가치를 인정하고 질권을 설정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방안이 있고, 한국통신이나 기타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등에서도 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에서는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창업및 경영에 필요한 일정규모의 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 1995. 7. 19).

이미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산권 가치인정으로 저작권재산권 담보제도는 미국, 일본등에서 금융권의 일반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9조에서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은 질권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한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이를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질권설정하여 즉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설정행위에서 특별한 약속이 없는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계속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익금으로 융자받은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위의 규정을 데이터베이스저작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사업자(저작권재산권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재산권가치를 금융권으로 부터 인정받고, 그 권리를 담보하여 개발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값싼이자로 융자받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저작권권을 질권 설정할 수도 있으며, 그 권리행사 즉 출판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재산권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위 프로그램법 19조와 같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 적용을 근거로 질권설정할 경우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어쩔수 없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가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해석상 한계에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육성진흥법」(가칭)을 신규제정하고 위와 같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정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1995년 8월 4일 제정 공포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주요

요소로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다(법 제 12조 5호참조).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법률에서 크게 비중을 두고 명문화하였다는 사실을 데이터베이스업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기대하는바가 크다.

그러나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산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정보화 촉진기반요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육성진흥법을 제정하여 ①법정기구로서 체계적인 추진 주체를 설정하고 ②표준화사업과 기술인력의 양성 ③자금지원 제도의 활성화 ④공공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육성지원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DC**